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99 발의연월일: 2023. 2. 2.

발 의 자: 강기윤·김용판·구자근

조은희 · 임병헌 · 김석기

서범수 · 조명희 · 박형수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현재 위기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이 어려워 금융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어 중요한 위기정후 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정후로서 채무정보를 유의성 있게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연체 정보는 가져오고 있으나 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않아,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위기정도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를 새로이 입수하여, 금융연체를 하고 있는 자의 위기 여부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더 정확도 있게 발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연체정보"를 "채무액과 연체정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	<u> 등</u>) ①
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	
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6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	
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연체정보</u> (대	<u>채</u>
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	<u>무액과 연체정보</u>
금 등을 말한다)로서 금융위	

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	
는 개인신용정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